

성생식 건강 서비스 이용 지원 기금

시민권 및 수혜 자격이 있는 이민 신분 안내 차트

본 차트는 이용자가 RHAF (Reproductive Health Access Fund) 성생식 건강 서비스 이용 지원 기금 등록 양식에 '수혜 자격이 있는 이민 신분' 또는 '미국 시민권자/국적 소유자'로 표시해야 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.

본 차트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이민 신분은 '기타 이민 신분'으로 간주됩니다.
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:	'수혜 자격이 있는 이민 신분'에 표시	'미국 시민권 또는 미국 국적'에 표시
합법적 영주권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		
– 19 세 미만인 자	✓	
– 19 세 이상이며, 영주권 카드의 '거주 시작' 날짜가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5 년이 지난 자	✓	
특정 기간 동안 특정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. 예시:	19 세 미만만 해당	
– 학생 비자 – 취업 비자 –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		
COFA 체결국의 시민권자인 경우	✓	
– 미크로네시아 연방 – 마셜제도 공화국 – 팔라우 공화국		
다음 지역에서 출생한 경우:		✓
– 미국 – 푸에르토리코 – 괌		

성생식 건강 서비스 이용 지원 기금

시민권 및 수혜 자격이 있는 이민 신분 안내 차트
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:	'수혜 자격이 있는 이민 신분'에 표시	'미국 시민권 또는 미국 국적'에 표시
-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- 아메리칸 사모아 -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		
미국 시민권자로 귀화한 경우		✓
2000 년 아동 시민권법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		✓
미국 이외 지역 출생자이지만 18 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자 부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		✓